

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안

□ 제정이유

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및 징수절차를 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함.

□ 주요골자

가.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을 정함. (안제2조)

- 정당한사유없이 조사·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1,000만원이하
-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500만원이하
-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없이 다른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00만원이하
-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500만원이하

나.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부여(안 제3조)

다.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함.(안 제4조)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조례 제정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·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및 징수절차를 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
- 안 제2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한도금액을 정하였고, 안 제3조에 과태료 부과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며, 안 제4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30일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였고, 안 제5조는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특히, 안 제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) 과태료 한도금액(벌표)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·징수조례와 비교시 약 2배에서 5배이상 과태료 한도금액이 강화된 것으로 이는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144조의 과태료 금액이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정한 한도내의 금액을 동 조례안에 적용한 것으로 사료됨.
- 참고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(2003. 1. 1)후 현재까지의 주요위반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받은 당초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,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, 주민등록상과 거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(허위 거주)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이 60여건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. 끝.